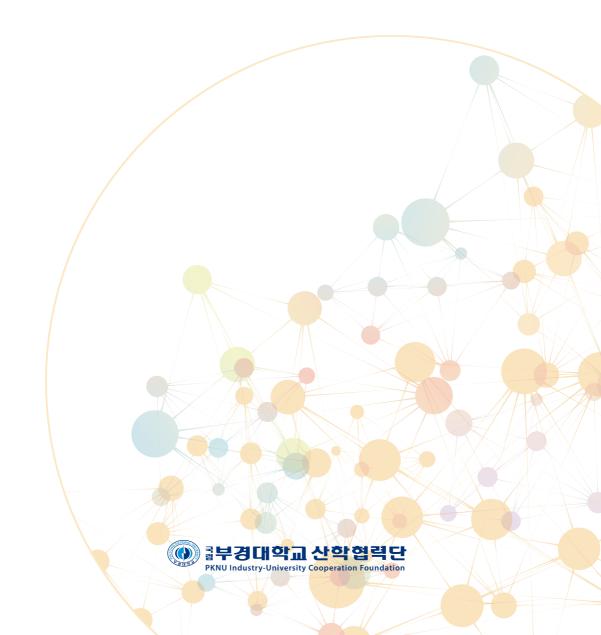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립부경대학교 특허 및 기술이전 가이드북



1. 부경대학교 특허출원 절차

가. 산학협력단 경비 지원 요청의 경우



나. 연구비 집행의 경우



다. 경비 지원내역(산학협력단 경비지원 요청 시)

- 심화인터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등급	급 지원내역		
S	국내출원, PCT출원, 개별국 1개 출원		
А	A 국내출원, PCT 출원		
В	국내출원		
С	C 재심의		

라. 출원특허의 유지 및 관리

- 특허등록일로부터 6년간 권리를 유지하고 6년을 초과한 특허에 대해서는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평가위원회를 통해 유지 여부를 결정.

2. 부경대학교 기술이전 절차

가 수요기업 발굴

· 기술이전이 필요한 수요기업 및 수요기술발굴

나. 기술 매칭

다. 기술이전 조건 조율

라.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 부경대학교 보유 기술 中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을 매칭
- · 특허, 노하우, 산업자문中 해당되는 기술이전 방법 선택
- ·기술료,계약기간,특허실시권 및양도에 따른조건 조율
- · 상호간 조율된 내용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 해당 기술이 정부기관의 과제로 발생하여 기관으로 통보해야하는 경우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에 고지

마. 비용 청구

·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술료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바. 발명자 보상 실시

· 납부된기술료중 일정부분을규정에 따라발명자보상진행

사. 사후관리

-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가 있거나 기술료가 분납인 경우 정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 청구 진행
- · 해당 기술이 정부과제로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에 실적 보고

07

3. 보상 규정

가. 발명자 보상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특허관련 경비를 공제하고 발명자에 대한 기술료 분배는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분배항목	분배비율	발명자 (기여자)	산학 협력단	기술이전 사업화
	지식재산권실시료	70(5)	20	10
기술이전	특허권 없는 노하우나 소프트웨어의 이전 및 임대	85(5)	5	10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또는 유지를 포기한 개인 발명의 실시료	90(5)	-	10
산업자문	산업자문실시료	80	10	10
자기실시	공동권리자의 자기실시로 인한 기술료	70	20	10
기술출자	지주회사 및 자회사 출자 이후 배당금 수익	50(5)	40	10

- ※ 기술이전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은 2017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
- * 산업자문의 경우 기타소득 8.8% 적용.

나, 교원업적평가 반영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 점	
특허 및 지식재산권	국제 특허	등록(획득) 500점	
	국내 특허	등록(획득) 200점	
	국제 지식재산권	등록(획득) 300점	
	국제 지식재산권	등록(획득) 100점	
기술	하이전	기술료수익 / 25,000원(최대 800점)	
기술 및 경영자문		계약실적 / 100,000(최대 300점)	

4. 특허란 무엇인가?

가. 발명과 특허

- **발명**: 교수, 연구원의 창작물로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이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으로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思想)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을 말함.
- 특허, 실용신안: 발명이나 연구결과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

나. 특허의 요건



다.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구 분	특 허	논 문
독점력	있 음	없음
유효기간	있 음	없음
권리설정	있 음	없음
법적보호	있 음	없 음
타인의 기술도용	불가	가 능

[※] 논문 발표 이전에 특허 출원 필요.

라.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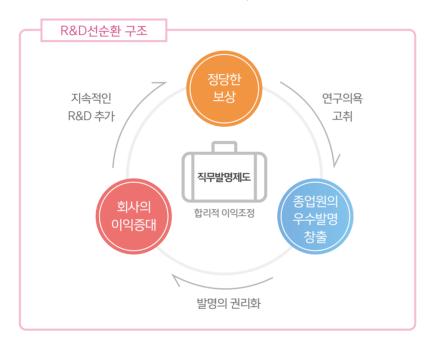
5. 직무발명 제도란 무엇인가?

가. 직무발명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부경대학교 소속 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부경대학교 명의로 진행.

나. 직무발명제도

-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다. 관련 법률

조 항	내 용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하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라. 연구성과물의 귀속

- 부경대학교 소속 발명자의 발명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해당업무 즉, 부경대학교 교직원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해서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창작하게 된 발명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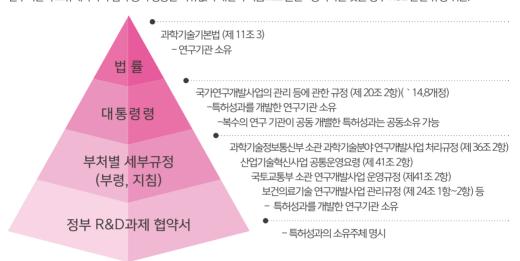
5. 직무발명 제도란 무엇인가?

라. 연구성과물의 귀속

*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연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 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과제 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 정부 R&D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성과는 관련규정 및 협약에 따라 해당 특허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이름으로 출원 · 등록하여 연구기관이 소유해야하며 협약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관련 규정 위반



6. 부경대학교 기술이전센터 현황

가. 설립목적

- 부경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발명,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 관리 및 운영하고 이를 산업체에 이전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및 지원.
- 대학의 연구결과 및 직무상 발생하는 발명을 대학의 지적재산으로 인식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그 수익을 창출하여 연구자 및 부경대학교 발전을 도모.

나. 주요업무

- 1) 특허 출원, 등록 등 업무
 - 발명신고서 접수 및 승계
 - 특허자문과 변리사 중개
 - 특허출원, 중간사건, 등록, 연차등록 관리
- 2) 기술확보 및 DB구축
 - 가치평가를 통한 우수기술 발굴 및 권리화
 - 보유기술 DB구축
- 3) 기술이전 및 기술마케팅
 - 기술이전 수요자 발굴
 - 이전대상 기술 중개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온·오프라인 마케팅
 - 대·내외 기술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참여

6. 부경대학교 기술이전센터 현황 —

다. 업무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 속	이 름	직 위	주요업무	연락처	이메일
기술이전센터	이석형	센터장	기술이전센터 업무 총괄	629–5666	365bhappy@pknu.ac.kr
	이경준	팀 장	기술이전계약체결 및 관리 사무(총괄) 기술사업화 사업기획 및 유치 지식재산권 업무 관리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운영 및 지원 연구계약서 내 지재권 사항 검토 발명인터뷰 및 심화인터뷰 운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요기업 발굴	629–7853	lkj75@pknu.ac.kr
	송은주	팀 원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운영 연구노트 관리	629–5217	eunjoo15@pknu.ac.kr
	염경희	팀 원	센터 회계 및 예산 담당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및 사후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경비 집행 지원	629–5210	yeom1988@pknu.ac.kr
	김은진	팀 원	기술이전 계약 관리 발명인터뷰 및 심화인터뷰 운영지원 기술사업화 사업 관리	629-5212	kej5042@pknu.ac.kr
	정서경	팀 원	청년TLO육성사업 운영	629-5669	jeongsk@pknu.ac.kr
기 술 지주회사	박윤희	팀 원	(주)부경대학교기술지주회사 운영 자회사(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 기술사업화 성과 관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629–5662	rtong17@pknu.ac.kr

